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산업통상부 소관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성숙 (산업통상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산업통상부 소관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고압가스 안전관리자 등이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직무대행 가능 기간을 종전 30일에서 최대 120일까지 인정하여 출산휴가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인용법령에 오류가 있는 경우를 바로잡는 등의 내용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23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부 등과 합의하였음

라. 기 타 : 1) 법령별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0. 0. ~ 0.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산업통상부 소관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1조(「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사용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120일) 이내로 한다.

제2조(「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광산피해
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1항제1호 중 “등록”을 “등록 및 변경등록”으로 한다.

제3조(「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연구협의회의 위원장은 연구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4조(「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량에 관한 법률」 제40조”를 “「계량에 관한 법률」 제65조”로 한다.

제5조(「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개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호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4호 및 제15호”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 및 제16호”로 한다.

제6조(「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20조”를 “같은 법 제23조”로 한다.

제16조제5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사용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120일) 이내로 한다.

제19조 중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제6호·제7호”로 한다.

제7조(「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보고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8조(「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지정취소”를 “지정취소와 청문”으로 한다.

제9조(「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의 개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제7호”를 “제6호”로 한다.

제10조(「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의 개정)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위원회”를 “심의회”로 한다.

제11조(「상공회의소법 시행령」의 개정)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후단 중 “특별자치시장·도시자”를 “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한다.

제12조(「석탄산업법 시행령」의 개정)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3조(「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사용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120일) 이내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중 “(제7조제3항관련)”을 “(제7조 관련)”으로 한다.

제14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사용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120일) 이내로 한다.

제15조(「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6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비고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1항제1호 중 “제1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고도의 기술”을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기술”로 한다.

제17조(「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의2가목 중 “사업장”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사업장”으로 한다.

제18조(「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의 개정)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통보해”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19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하다)

2. 사업자등록증명(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하다)

2. 사업자등록증명(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제20조(「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 중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아래에 “장관 귀하”를 삭제한다.

제21조(「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3월”을 “3개월”로 한다.

제24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지정”을 각각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지정취소”로 한다.

제22조(「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정된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의 명칭 및 관련된 내용을 관보나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23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10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1조의3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료 경감률은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제18조의7제2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의 개방 여부, 이용 가능 시간 및 종류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국유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1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안전관리자의 업무) ① ~ ③ (생략)	제13조(안전관리자의 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 ----- ----- ----- ----- ----- -----.
1. 법 제15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30일 이내의 기간 <단서 신설>	1. ----- ----- -----.
	다만,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사용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120일) 이내로 한다.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① 산업통상부장 관(제38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 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 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같 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 번호(제2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포함된 자 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① ----- ----- ----- ----- ----- ----- ----- ----- ----- ----- -----.
1. 법 제13조에 따른 전문광해 방지사업자의 <u>등록</u> 에 관한 사 무	1. ----- ----- <u>등록 및 변경등</u> <u>록</u> ----- --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광융합기술 연구협회의의 구성·운영) ① (생략) <u><신설></u> ②·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연구협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협회의가 정한다.	제6조(광융합기술 연구협회의의 구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u>연구협회의의 위원장은 연구 협회의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 選)한다.</u>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⑤ ----- 제4항----- ----- ----- -----.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한국계량측정협회의 사업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교정 및 관련 기기 산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하여 「계량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생략)	제18조(한국계량측정협회의 사업 등) ① ----- ----- ----- ----- 「계량에 관한 법률」 제65조----- ----- -----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2(물류시설의 범위) 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물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10조의2(물류시설의 범위)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 14호 및 제15호에 따른 집배 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 15호 및 제16호----- -----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도시가스 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 ① (생략)	제11조(도시가스 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사 용자가 도시가스의 온도와 압력 을 보정하는 장치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 을 갖춘 장치(이하 “온압보정장 치”라 한다)를 설치하여 사용하 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에게 대 하여 온압보정장치로 측정된 도 시가스 공급량을 적용한다.	② -----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 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아 제조된 것으로서 <u>같은 법 제20조에</u> 따른 검정을 받 은 것	2.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 조제1항----- ----- <u>같은 법 제23조</u>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안전관리자의 업무) ① ~	제16조(안전관리자의 업무) ①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	⑤ -----

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30일 이내의 기간 <단서>
신설>

2. (생략)

⑥ (생략)

제19조(준용규정)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 관
하여는 제8조, 제13조부터 제17
조까지, 제20조제1항제1호·제2
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illegible]

1. -----

-----.

다만,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
른 출산전후휴가 사용으로 직
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에는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
우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
녀를 임신한 경우는 120일) 이
내로 한다.

2.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준용규정) -----

----- 제20조제1항제1호 · 제2
호 · 제6호 · 제7호-----

-----.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원금의 관리) ①·② (생략) ③주관기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사용실적을 매년 1회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u>보고하여야</u> 한다.	제7조(지원금의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u>제출해야</u>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요건·절차) ① ~ ⑦ (생략) ⑧ 제6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부터 5년으로 한다.	제12조(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요건·절차) ① ~ ⑦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⑨ ----- <u>제7항</u> ----- ----- ----- -----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권한의 위탁) ① 산업통상 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사무에 관한 권한을 중소기업부장관에 게 위탁한다.	제29조(권한의 위탁) ①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5조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법 제23 조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 의 <u>지정취소</u>	2. ----- ----- ----- -- <u>지정취소와 청문</u>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① (생략) ② 제1항제3호·제5호 및 <u>제7호</u> 에 따른 인증 및 지원의 실시 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 <u>제6호</u> - ----- -----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심의회회의 운영 등) ① 심의회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u>위원회의</u> 업무를 총괄한다. ② ~ ⑤ (생략)	제3조(심의회회의 운영 등) ① ----- ----- -- <u>심의회</u> -----. ② ~ ⑤ (현행과 같음)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준용규정) 대한상공회의소에 관하여는 제2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u>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제8조제2항 및 제9조 중 “시·도지사”는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제6조 중 “의원과 특별의원의 선거”는 “특별의원의 선거”로 본다.	제13조(준용규정) ----- ----- -----, ----- ----- <u>특별자치시</u> <u>장·도지사</u> ----- ----- ----- ----- ----- -----.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석탄가공업의 등록) ① (생략)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 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석탄가공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2. (생략) 3. <u>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u> <u>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u> <u>경우</u>	제14조(석탄가공업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1.·2. (현행과 같음) <u><삭 제></u>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등)	제5조(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등)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 ----- ----- ----- ----- -----.
1. 법 제7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30일 이내의 기간 <단서 신설>	1. ----- ----- -----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사용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120일) 이내로 한다.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의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	제16조(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
① ~ ③ (생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 ----- ----- ----- ----- ----- -----.
1.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30일 이내의 기간 <단서 신설>	1. ----- ----- ------. 다만,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사용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120일) 이내로 한다.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지원 기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주기업체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의2(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지원 기준) ① ----- ----- ----- -----.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u>고도의 기술</u> 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는 자	1. ----- <u>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기술</u> ----- -----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업무의 위탁) ① (생략)	제15조(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 무를 연합회에 위탁한다.	②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1의2. 법 제17조의7제1항에 따 른 특례의 대상이 되는 중견 기업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1의2. ----- ----- ----- ---
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 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제3항에 따른 사업 전환계획 승인신청서의 접 수 및 <u>사업장</u> 에 대한 현장 실제 조사	가. ----- ----- ----- ----- --- <u>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사업장</u> ---
나.·다. (생략)	나.·다. (현행과 같음)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로봇랜드의 관리 등) ① (생 략)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40조제2 항에 따라 로봇랜드의 조성·관 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u>통보해</u> 한다.	제24조(로봇랜드의 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통보해야</u>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 관리전문기관) ① (생략)	제4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 관리전문기관) ① (현행과 같음)
<u><신설></u>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② ~ ⑤ (생략)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하다) 2. 사업자등록증명(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제7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 ① (생략)	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제7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 ④ (생 략)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하다)
2. 사업자등록증명(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및 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① 삭제	제20조(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및 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②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월을 말한다.	②----- ----- ----- 3개월-----.
제2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제24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를 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고용노동부장관(제2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 ----- ----- ----- ----- -----.
1. 법 제6조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u>지정</u> 에 관한 사	1. ----- ----- <u>지정 및 같은 법</u>

무	<u>제17조에 따른 지정취소</u> ----- --
2. 법 제11조에 따른 통상변화 대응지원근로자의 <u>지정</u> 에 관 한 사무	2. ----- ----- <u>지정 및 같</u> <u>은 법 제17조에 따른 지정취</u> <u>소</u> -----
3. 법 제14조에 따른 통상피해 지원기업의 <u>지정</u> 에 관한 사무	3. ----- ----- <u>지정 및 같은 법</u> <u>제17조에 따른 지정취소</u> -----
4. 법 제15조에 따른 통상피해 지원근로자의 <u>지정</u> 에 관한 사 무	4. ----- ----- <u>지정 및 같은 법</u> <u>제17조에 따른 지정취소</u> -----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 ① (생략)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개발·이전·확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7조제1항의 청정생산지원센터 중 하나 이상을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0조(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u>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정된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의 명칭 및 관련된 내용을 관보나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u> ③ (현행과 같음)
③ (생략)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의10(국유재산의 임대료 경감) ① 법 제11조의3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료 경감률은 해당 국유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제18조의10(국유재산의 임대료 경감) ① 법 제11조의3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료 경감률은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제18조의7제2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의 개방 여부, 이용 가능 시간 및 종류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국유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정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홍보활동의 시행기관) 법 제12조에서 “자동차관련 단체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19조(홍보활동의 시행기관)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u>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u>」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u>친환경상품진흥원</u> 4. (생략)	3. 「<u>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u>」에 따른 <u>한국환경산업기술원</u> 4.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부 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3 - 5544